#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390

발의연월일: 2022. 7. 11.

발 의 자:김승남·고용진·김영호

김홍걸 · 소병훈 · 양경숙

이성만 • 이인영 • 임종성

전해철 • 조오섭 • 주철혂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우리나라에서 고성산불 등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 등 산림재해를 상시적으로 감시 및 대응할 수 있는 산림위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.

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지난 2019 년부터 2025년 2월 발사를 목표로 산림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림 위성을 개발해오고 있지만, 현행법에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·운영하 고, 관측된 정보를 수집·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함.

이에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·운영하고,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농림위성정보와 산악기상망, 플럭스타워, LiDAR, IoT, 인공지능 등 기술을 융복합한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를 생산·구축의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(안 제33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, 산사태, 산림병해충의 예방·방제 및 복구,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·운영하고, 관측된 정보를 수집·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·운영 및 정보 수집·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개 정 안 제33조의2(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, 산사태, 산림병해충의 예방·방제 및 복구, 기후변화에따른 산림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·운영하고, 관측된 정보를 수집·활용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
	측망의 구축·운영 및 정보 수 집·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